

한화 디딤 안정성장자산배분증권 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 EE849]

투자 위험 등급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투자전략 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자산가격 변동 위험, 재간접 투자위험, 국가위험, 자산배분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자산가격 변동 위험, 재간접 투자위험, 국가위험, 자산배분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한화 디딤 안정성장자산배분증권 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 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전략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디딤펀드(연금특화 자산배분펀드)”로서,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며, 시장상황, 자산가치 변동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조정을 하는 자산배분전략을 통해 중장기 수익을 추구하는 연기금형 자산배분펀드입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복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고 주기적으로 투자대상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자산배분전략을 활용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위험이 상이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의 영향에 따른 자산간 가격변동 및 금융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함으로써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적인 가치상승을 추구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라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을 계획이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에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투자위험이 상이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 주식 관련 자산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고, 외화 표기 채권 관련 자산은 60% 이상 환헤지를 실행하여 자산별 특성에 맞는 환헤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비교지수: 없음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및 비용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 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개인연금 (C-P(연금저축))	없음	0.70	0.36	-	0.8698	89	183	281	493	1,121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연금 (C-Pe(연금저축))	없음	0.52	0.18	-	0.6898	71	145	223	391	889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직연금 (C-RP(퇴직연금))	없음	0.62	0.28	-	0.7898	81	166	255	447	1,018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퇴직연금 (C-RPe(퇴직연금))	없음	0.48	0.14	-	0.6520	67	137	211	369	84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직연금 (O(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없음	0.45	0.11	-	0.6098	63	128	197	345	786

* '1,000만원 투자시 투자가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가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펀드 보수 포함])을 의미 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종류형 **직접 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4/09/26~ 2025/09/25	-	-	-	
	수수료미정구-오피리안 개인연금(C-P(연금자축))	2024.09.25	15.16			15.24	
	수익률변동성(%)		6.89			6.89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단위: 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재간접형) (단위: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현	1982	책임(팀장)	32	12,730	-	-	9.36	12.48	2년 11개월	
배철한	1991	부책임(매니저)	25	5,480	17.67	-			1년 9개월	

* 기준일: 2025년 9월 25일

*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 이력이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이 종 유효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결원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이犁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table border="1" data-bbox="271 752 1475 1673"> <thead> <tr> <th data-bbox="271 752 462 804">구 분</th><th data-bbox="462 752 1475 804">투자위험의 주요 내용</th></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71 804 462 999">원금손실 위험</td><td data-bbox="462 804 1475 999">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td></tr> <tr> <td data-bbox="271 999 462 1673">환율변동위험</td><td data-bbox="462 999 1475 1673">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해외 통화로 거래되는 국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으로 해당 자산은 환율별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해당 외화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투자대상 자산 중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해서만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해지할 예정입니다.</p> <p>외화 표기 채권 관련 자산의 100% 환해지는 불가능하며, 목표 환해지 비율은 해당 집합투자증권 순자산의 60% 이상이며, 최대 100% 수준입니다. 그리고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보유자산의 가격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해지비율은 목표 해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해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향후 거래비용과 유동성,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해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없거나 운용전략 측면에서 환해지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운용역이 판단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환해지 전략을 실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p>한편 환해지를 통하여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외화가치상승/원화가치하락)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해지를 위한 파생상품계약의 만기시 파생상품거래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td></tr> <tr> <td data-bbox="271 1673 462 1875">국가위험</td><td data-bbox="462 1673 1475 1875">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td></tr> <tr> <td data-bbox="271 1875 462 2077">자산배분위험</td><td data-bbox="462 1875 1475 2077">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주로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분산 투자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각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이 시장의 움직임과 괴리가 생기거나 투자한 특정 자산의 손실이 커지는 경우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손실이 예측한 규모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td></tr> <tr> <td data-bbox="271 2077 462 2115">재간접</td><td data-bbox="462 2077 1475 2115">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주로 타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타</td></tr> </tbody> </tabl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원금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환율변동위험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해외 통화로 거래되는 국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으로 해당 자산은 환율별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해당 외화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투자대상 자산 중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해서만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해지할 예정입니다.</p> <p>외화 표기 채권 관련 자산의 100% 환해지는 불가능하며, 목표 환해지 비율은 해당 집합투자증권 순자산의 60% 이상이며, 최대 100% 수준입니다. 그리고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보유자산의 가격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해지비율은 목표 해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해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향후 거래비용과 유동성,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해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없거나 운용전략 측면에서 환해지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운용역이 판단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환해지 전략을 실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p>한편 환해지를 통하여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외화가치상승/원화가치하락)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해지를 위한 파생상품계약의 만기시 파생상품거래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국가위험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자산배분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주로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분산 투자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각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이 시장의 움직임과 괴리가 생기거나 투자한 특정 자산의 손실이 커지는 경우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손실이 예측한 규모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재간접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주로 타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타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원금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환율변동위험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해외 통화로 거래되는 국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으로 해당 자산은 환율별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해당 외화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투자대상 자산 중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해서만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해지할 예정입니다.</p> <p>외화 표기 채권 관련 자산의 100% 환해지는 불가능하며, 목표 환해지 비율은 해당 집합투자증권 순자산의 60% 이상이며, 최대 100% 수준입니다. 그리고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보유자산의 가격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해지비율은 목표 해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해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향후 거래비용과 유동성,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해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없거나 운용전략 측면에서 환해지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운용역이 판단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환해지 전략을 실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p>한편 환해지를 통하여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외화가치상승/원화가치하락)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해지를 위한 파생상품계약의 만기시 파생상품거래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국가위험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자산배분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주로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분산 투자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각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이 시장의 움직임과 괴리가 생기거나 투자한 특정 자산의 손실이 커지는 경우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손실이 예측한 규모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재간접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주로 타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타												

	<p>투자위험</p> <p>집합투자기구의 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p> <p>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존 수익자 또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매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 투자신탁은 유사한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을 가진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투자하거나 대체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p>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의 위험</p> <p>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p>															
	<p>※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매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9영업일(D+8)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table border="1"> <tr> <td>산정방법</td><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 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td></tr> <tr> <td>공시장소</td><td colspan="2">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 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 </table>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 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 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 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 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과세의 주요 내용</th></tr> </thead> <tbody> <tr> <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 <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 과세 됩니다.</td></tr> <tr> <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 C-P(연금저축), C-Pe(연금저축) S-P(연금저축), J-Pe(연금저축) 수익증권 수익자(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td></tr> <tr> <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d></tr> <tr> <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 C-RP(퇴직연금), C-RPe(퇴직연금), S-RP(퇴직연금), J-RPe(퇴직연금), O(퇴직연금-디폴트옵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td></tr> <tr> <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 </td></tr> </tbody> </table>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 과세 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 C-P(연금저축), C-Pe(연금저축) S-P(연금저축), J-Pe(연금저축) 수익증권 수익자(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 C-RP(퇴직연금), C-RPe(퇴직연금), S-RP(퇴직연금), J-RPe(퇴직연금), O(퇴직연금-디폴트옵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 과세 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 C-P(연금저축), C-Pe(연금저축) S-P(연금저축), J-Pe(연금저축) 수익증권 수익자(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 C-RP(퇴직연금), C-RPe(퇴직연금), S-RP(퇴직연금), J-RPe(퇴직연금), O(퇴직연금-디폴트옵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 																

	<p>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p> <p>※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 및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 지위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 업자	한화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6950-00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hanwhafund.com)																																									
모집기간	2024년 9월 14일부터 계속 모집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까지 모집(판매) 가능																																							
효력 발생일	2025년 10월 15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p>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Class)</th> <th colspan="3">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 </tr> </thead> <tbody> <tr> <td>판매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td> <td colspan="3">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 <td rowspan="2">판매 경로</td> <td>온라인 (e)</td> <td colspan="2">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 <td>오프라인</td> <td colspan="2">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 <td rowspan="2">기타</td> <td>온라인 슈퍼(S)</td> <td colspan="2">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 <td>온라인 직접판매 (J-e)</td> <td colspan="2">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 <td>개인연금 (P)</td> <td colspan="3">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 <td>퇴직연금 (RP)</td> <td colspan="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S-RP(퇴직연금))의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됩니다.</td></tr> <tr> <td>퇴직연금-디폴트옵션 (O)</td> <td colspan="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td></tr> <tr> <td>고유재산 (S)</td> <td colspan="3">투자신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혹은 집합투자업자의 계열금융회사가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td></tr> </tbody> </tabl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직접판매 (J-e)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S-RP(퇴직연금))의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퇴직연금-디폴트옵션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고유재산 (S)	투자신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혹은 집합투자업자의 계열금융회사가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직접판매 (J-e)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S-RP(퇴직연금))의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퇴직연금-디폴트옵션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고유재산 (S)	투자신탁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혹은 집합투자업자의 계열금융회사가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m)